





목적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세부지원내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구분 | 내용 |
|-------------------|---|
|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수료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증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인은 ①,②,③을 재촌비농업인은 ①,③,④,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귀농 농업창업자금 | 3억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구입, 축사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시설마련 지원, 소모성사업 제외 ▪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 |
| 주택구입·신축 자금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²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

| 구분 | 내용 |
|-----------------|--|
|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 영암군 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
| 지원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단독 세대주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 소유자는 귀농 인수에서 제외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소득합계(신청 전년도 소득증명원상)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대전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귀농인 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시 재 지원되지 않음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
| 귀농정착금 | <p>세대당 월 3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확정시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

귀농인

| 구분 | | 내용 |
|-----------------|-------------------------|--|
| |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금 전액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지원자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p>※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p> |
| 귀농·귀촌인 | 지원대상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
| | 지원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단독 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
| | 개소당 5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수리비용 지원 (신축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비의 50%, 5백만원 이내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주택 임대차는 사업완료 시점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임차주택 보다 구입주택을 우선으로 선정 ▪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
| |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지원사업과 동일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및 귀촌인 12명 이상으로 구성된 품목별 학습 모임체(50%이상 귀농인) ※ 귀농인과 귀촌인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관내 선도 농가를 30% 범위 이내에서 회원으로 영입가능 ▪ 별도의 회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모임 활동이 가능한 학습 모임체 |
| 학습동아리 지원 | 모임체 당 3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강사초빙, 선진지 견학, 학습교재, 식비 등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 구분 | | 내용 |
|---------------|----------|---|
| 이웃주민 초 청행사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 전입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영암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마을이장과 동시 신청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70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
| | 개소당 5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및 다과 준비 비용, 행사준비 비용(현수막) ※ 인건비, 수건 등 선물지급비용 지급 불가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

■ 사업주관 기관

- 군수(읍·면장)

■ 사업담당부서

- 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470-2555~2557)
- 읍면
 - 영암읍 470-6056
 - 삼호읍 470-6094
 - 덕진면 470-6151
 - 금정면 470-6192
 - 신북면 470-6232
 - 시종면 470-6274
 - 도포면 470-6311
 - 군서면 470-6352
 - 서호면 470-6392
 - 학산면 470-6434
 - 미암면 470-6474

■ 사업신청기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상담(연중):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470-2556)
 - 신청: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일부사업은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